

www.mafra.go.kr

### 202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도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

| 시도      | 부서명      | 사무실 전화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서울특별시   | 농수산유통담당관 | 02-2133-4461  |
| 부산광역시   | 농축산유통과   | 051-888-4971  |
| 대구광역시   | 농산유통과    | 053-803-6522  |
| 인천광역시   | 농축산과     | 032-440-4374  |
| 광주광역시   | 농업동물정책과  | 062-613-3964  |
| 대전광역시   | 농생명정책과   | 042-270-3845  |
| 울산광역시   | 농축산과     | 052-229-2913  |
| 세종특별자치시 | 농업정책과    | 044-300-4323  |
| 경기도     | 친환경농업과   | 031-8008-5448 |
| 강원도     | 친환경농업과   | 033-249-3561  |
| 충청북도    | 스마트농산과   | 043-220-3615  |
| 충청남도    | 스마트농업과   | 041-635-2523  |
| 전라북도    | 농산유통과    | 063-280-2618  |
| 전라남도    | 친환경농업과   | 061-286-6331  |
| 경상북도    | 친환경농업과   | 054-880-3362  |
| 경상남도    | 친환경농업과   | 055-211-6316  |
| 제주특별자치도 | 친환경농업정책과 | 064-710-3163  |

# 2024년도 친환경농업 직불금 알아보기



##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

- 목적** 친환경 농가의 일반농가 대비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지급합니다.
- 신청요건** 친환경 인증을 받고 농·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·임업인 및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\*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, 34조 /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)
- 지급요건** 직불금 사업기간 (전년 11월~당해 연도 10월까지) 동안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(5월말~10월)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경우 직불금을 지급(12월)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** 인증단계(무농약, 유기)별·품목군(논, 밭작물)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.
  - ☑ '24년 예산 : 22,832백만원(국비 100%)
  - ☑ **지급한도** : 0.1~5.0ha/농가당
  - ☑ **지급기한** : 유기 5년(무농약 3+유기 2), 무농약 3년, 유기지속(유기 6년차부터)

|   |    | 유기         | 무농약        | 유기지속     |
|---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
| 밭 | 논  | 700천원/ha   | 500천원/ha   | 350천원/ha |
|   | 과수 | 1,400천원/ha | 1,200천원/ha | 700천원/ha |
|   | 기타 | 1,300천원/ha | 1,100천원/ha | 650천원/ha |

\*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4조

### 지급 제외 농지

- 사업기간중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하지만 아래 해당 경우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
- ①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(培地)나 재배용기·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·양액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등(다만,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)
- ②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(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)을 굴취·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
- ③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 등,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,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 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
- ④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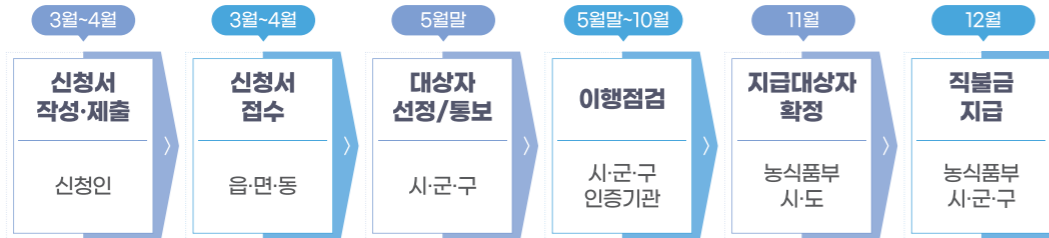
\*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별표2

## 2024년도 친환경농업직불금 알아보기

- 01 친환경농업직불금이란
- 02 직불금 신청
- 03 직불금 지급대상자
- 04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
- 05 직불금 지급
- 06 직불금 관련법령
- 07 궁금한 이야기 Q&A



## 직불금 이렇게 신청해요



**신청방법**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신청 합니다.

**신청기간** 2024년 3월 4일 ~ 4월 30일

**구비서류**

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



\*또는 시도 및 시·군·구 담당자 문의

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



**주의사항**

- 신청자 명의로 유효한 친환경인증 정보가 있어야 신청 후 사업대상으로 선정 가능
- 신청 농지가 시·군·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- 전년도 10월 이전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금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**금년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**

\* 전년도 11월 1일 이후 신규 인증농가는 당해 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, 인증갱신을 통해 차년도까지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 내년에 신청가능

##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

**선정대상**

사업 신청 기간에 신청한 자로서 사업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  
\* (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, 34조 /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)

**선정결과 통보**

2024년 5월 31일 까지

시·군·구에서는 신청 요건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합니다.

\* 단, 이후 사업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이 시기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한 시·군·구에 문의하여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

• 사업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(5월말) 되고 이행점검(5월말~10월) 결과 적합으로 통보 받아야 지급 대상으로 확정(11월) 되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

### 점검기간

2024년 5월말 ~ 10월 31일

- ☑ 시·군·구: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지급한도 초과 여부 등 확인
- ☑ 인증기관: 인증기준 준수 여부, 인증 변동사항 확인, 위반 의심농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등

### 점검사항

시·군·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(신청 정보 변경 시에는 수시 요청)



### 점검 결과 확정

- ☑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인증의 유효성 여부 검증 결과 등을 10월 말까지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·군·구에 통보
- ☑ 시·군·구는 인증기관의 최종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확인점검 사항을 검증한뒤 사업대상자별 이행점검결과를 확정

### 확인·점검 사항

- ① 사업기간(전년 11월~당해년 10월)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이행점검 점검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지 여부
- ② 인증정보(인증번호, 인증사업자, 인증면적 및 필지 등)와 직불금 신청정보와의 일치 여부
- ③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, 필지 중복신청 및 지원횡수 초과 여부
- ④ 지급한도(5ha) 초과 여부
- ⑤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제외 농지기준(3p참조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(해당하는 경우는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제외)

### 주의사항

- 사업기간 중 인증 사업자, 인증기관,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(변경 사유 발생 30일 이내) 신청 정보를 변경해야하며 미 신고 시 직불금 미지급 등 불이익 발생가능
- \* 인증이 변경(무농약 → 유기)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·면·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
- \*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정보가 승계 처리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자 등 신청정보 변경 가능

## 직불금 이렇게 지급되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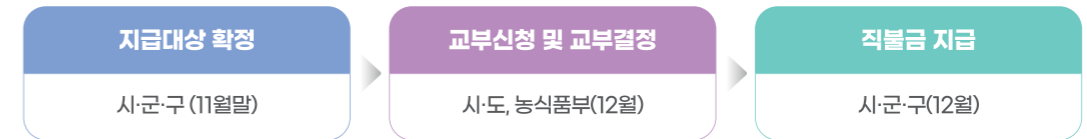
### 지급대상 확정

사업 신청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(5월말) 지자체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(5월말~10월) 결과 적합으로 통보받은 농업인 등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합니다.

### 지급시기

11월말 ~ 12월

- ☑ 각시·도(시·군·구)에서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친환경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(12월)
- ☑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정 여부를 시·도(시·군·구)에 문의 하여 확인 가능(12월)



### 부정수급 등 환수대상

- ☑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기간 내 인증이 취소되거나, 인증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직불금 회수
- ☑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「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회수 조치하고, 해당 농업인 등은 향후 3년간 선정 제한



# 직불금 관련법령 어렵지 않아요

## 친환경농업직불 시행 근거

###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21조 (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선택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한다.
  - 1.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2.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3.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

## 시행 절차 등

###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~26조 (친환경농업직불금 관련)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 (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)

-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지급 /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급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위임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1조 (지급대상농산물)

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2조 (지급기준)

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3조 (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)

-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함.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4조 (지급대상자 선정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은 제23조에 따른 신청인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5조 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)



#### ☑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6조 (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)



# 궁금한 이야기 Q&A

## 0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산출근거는?

▶ 관행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재배 품목별 평균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감안하여 지급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.

## 02 '12년도에 무농약을 제외한 유기만 지급기간을 연장(3년→5년)한 이유는?

▶ 무농약 인증의 경우 일반 관행농업과의 소득차를 해소하는 데 약 3년의 소요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기인증은 최소 4~5년 소요됩니다.

\*유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, 무농약인증 농가가 유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

## 03 '12년부터 유기직접지불금 지급기간을 연장(3년→5년)하면서 그 대상에 '10년까지 직접지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?

▶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지만 '10년까지 직불금을 3회 수령한 농가는 4~5년 이상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여 재배기술이 향상되고 관행농업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
## 04 '15년부터 지속직접지불금을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유기 농가로 한정 한 이유는?

▶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재배 지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을 유기재배 실천 농가로 한정하였습니다.

## 05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은?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5년 또는 5회(무농약 3회+유기 2회) 지급이 완료된 필지에서 계속해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와 '10년까지 친환경직접지불금 3회 수령 한 필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면 유기지속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 06 상양삼, 밤, 잣 등 임야에서 재배하는 품목도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?

▶ 임야 필지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체 등록된 필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 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07

**친환경인증 필지가 여러 시·군에 걸쳐있는 경우 어디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하는지?**

▶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직접지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 다만 신청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 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인증농지 합계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.

08

**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이 5ha인 이유는?**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등 수급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, 재정 여건 하에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대다수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·확산하도록 지급면적 상한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
\* 경영주와 배우자(경영주 외 농업인 등록)가 별도로 인증을 받고, 각각 직접지불금 신청하더라도 경영체당 5ha를 초과할 수 없음

09

**기본형직불제 등 타 직접지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?**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임업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경영이양 직불금과는 중복지급이 안됩니다.

10

**농외소득이 3,7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가?**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 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것으로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11

**'24년 3월에 친환경인증을 처음 받은 자가 '24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이 가능한가?**

▶ 다음 연도 사업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기간(전년 11.1.~10.31.) 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.

12

**사업기간 중 인증단계가 변경되었을 경우 직불금 단가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?**

▶ 농업인은 읍·면·동 사무소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변경된 인증단계의 지급단가로 직접지불금이 지급됩니다.

13

**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대상자가 사업기간 중간에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사업을 승계 또는 양도 한 경우 상속 또는 양수인에게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한가?**

▶ 가족 또는 타인에게 인증을 승계한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읍·면·동에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한 경우 직접지불금 지급이 가능합니다.

14

**사업기간 중 인증기간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?**

▶ 사업 기간 중 인증 갱신이 이루어져 직불금 지급 시점에 신청한 필지에 대한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. (단, 사업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)

15

**친환경직접지불금 지급 완료 후, 친환경인증이 취소, 종료 등 경우에 직접지불금을 환수해야 하는가?**

▶ 사업 대상자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 (전년11~10월) 인증취소, 인증기간 종료,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.

16

**인증농가가 2,000㎡(직불금 수령완료)외 추가로 500㎡를 인증 받고, 직접지불금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한가?**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한도 면적은 0.1ha~5ha로 지급면적은 최소 0.1ha 이상이어야 하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.

17

**'17년 무농약, '18년 유기, '19년 무농약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'22년 무농약 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 가능한지?**

▶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기본적으로 3회 지급이 원칙이므로 '22년도 무농약직불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유기에 한해 2회 추가 지급하므로 해당 농가가 유기 인증을 취득하고 유기직접지불금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8

**10.31일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?**

▶ 인증기관은 10.31일까지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적합으로 회신하고 이후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해당 시·군·구로 통보해야 하며 담당기관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.